

포상규정

(제31차 개정 2023. 12. 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스카우트연맹(이하 본 연맹이라 한다) 헌장 제17조에 의한 포상의 시행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1. 12. 29.)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포상이라 함은 이 규정에 규정된 모든 증장, 기장을 총칭한다.

제3조(포상의 대상) 본 연맹의 포상은 등록된 대원, 지도자 및 각급 조직 단위와 본 연맹 발전에 기여한 국내외 인사 및 기관에 수여한다. (개정 89. 2. 20.)

제4조(포상의 추천 및 심의 확정) ① 중앙본부 포상의 추천 및 심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포상의 추천은 지구연합회 회장의 상신과 지방·특수연맹 연맹장의 추천으로 사무총장이 행한다. (개정 09. 11. 13.)
2. 헌장 제89조제1호에 의거 추천되는 지방·특수연맹 포상사항은 사무총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중앙명예회의에서 심의 확정한다. (개정 09. 11. 13.)
다만, 일부 표창에 대하여는 지방명예회의에 그 심의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04. 12. 16.)

② 지방·특수연맹 포상의 추천 및 심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09. 11. 13.)

1. 포상의 추천은 지구연합회 회장의 추천으로 사무처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지방 명예회의에서 심의 확정한다.
2. 사무처장이 추천하는 지방·특수연맹 포상 사항은 지방 명예회의에서 직접 심의 확정한다. (개정 09. 11. 13.)

③ 지구연합회 포상의 추천 및 심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대원의 포상 추천은 단위대, 육성단체 대표자의 추천으로 지구 사무국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지구명예회의에서 심의 확정한다.
2. 지구 사무국장이 추천하는 지구연합회 포상사항은 지구 명예회의에서 심의 확정 한다. (개정 04. 12. 16.)

④ 전 제1항 내지 제3항 각호의 포상 추천 양식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제5조(이중 포상의 금지) 동일공적에 대하여 이중 포상은 할 수 없다.

(포상규정)

제6조(재교부) ① 수상자가 기장 또는 증장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는 중앙본부에 실비를 납부하고, 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87. 2. 20.)

② 전항의 교부신청 양식은 별표 제2호와 같다.

제7조(전시용 증장 및 기장) 본 연맹의 중앙본부, 지방·특수연맹 및 지구연합회가 전시에 사용할 증장과 기장은 본 연맹 중앙본부에서 그 필요에 따라 별도 제작하여 유상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09. 11. 13.)

제8조(기록 보존) 중앙본부, 지방·특수연맹 및 지구연합회는 수상자의 인적사항을 각 종류별로 스카우트회원관리 시스템에 기록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3. 12. 19.)

제2장 포상의 종류

제9조(포상의 종류) ① 중앙본부 포상은 다음과 같다.

(포상규정)

구분	종 류		수 여 대 상	비 고
특별표창	정부관서 및 기타 단체표창		훈육 및 전종지도자 대외인사	(개정 13. 12. 19.)
성인 및 단체표창	공 로 장	무 궁 화 금 장 (증장, 메달, 훈장, 기장)	지도자, 대외인사 및 외국인	(개정 13. 12. 19.)
		무 궁 화 은 장 (증장, 메달, 기장)		
		무 궁 화 동 장 (증장, 메달, 기장)		
	봉사대장(증장, 메달, 기장)		임원 및 단위대 지도자	(개정 13. 12. 19.)
	봉사장(증장, 메달, 기장)		임원 및 단위대 자도자	(개정 13. 12. 19.)
	표창기장(증장, 훈장)		훈육 및 전종지도자	(개정 13. 12. 19.)
	전국명예대장 (증장, 메달, 훈장, 기장)		훈육지도자	(개정 13. 12. 19.)
	명예대장(증장, 메달, 기장)		훈육지도자	(개정 13. 12. 19.)
	표창장(증장)		지도자	필요에 따라 표창패로 대신함
	감사기장(증장, 메달, 기장)		협조지도자, 대외인사 및 외국인	(개정 13. 12. 19.)
	감사장(증장)		대외인사, 단체 및 외국인	필요에 따라 감사패로 대신함
	모범대장 표창기장(증장, 훈장)		단대장, 대장 및 부대장	총재 (개정 13. 12. 19.)
	세계우애장 교류 (증장, 메달, 약장)		외국 스카우트 인사 및 단체	총재 (개정 23. 12. 18.)
	세계우애장 화랑 (증장, 메달, 약장)		세계우애장 수여 후 3년 경과한 외국 스 카우트 인사 및 단체	
	세계우애장 태극 (증장, 메달, 약장)		화랑 수여 후 5년 경 과한 외국 스카우트 인사 및 단체	
	국제봉사장 (International Service Award) (증장, 메달, 기장)		지도자	총재 (개정 13. 12. 19.)
훈련봉사장		다이아몬드	훈련과정에 1,000시간 이상 봉사한 지도자	총재 (신설 22. 12. 22.)
		골드	훈련과정에 800시간 이상 봉사한 지도자	
		실버	훈련과정에 500시간 이상 봉사한 지도자	
		브론즈	훈련과정에 300시간 이상 봉사한 지도자	

(포상규정)

구분	종 류	수 여 대 상	비 고
대원표창	전국명예스카우트표창기장 (증장 및 기장, 장학금)	대 원	총재
	명예스카우트 표창기장 (증장 및 기장, 장학금)	대 원	총재
	모범대원 표창기장 (증장 및 기장)	대 원	총재
	인명구조장 (증장 및 기장)	"	총재 (개정 95. 2. 28.)
	선행스카우트 표창장 (증장)	"	총재 (개정 07. 12. 20.)
	우수대원 표창기장 (증장 및 기장)	"	"
	봉사대원 표창장 (증장)	"	총재 (개정 07. 12. 20.)
	국제교류장 (International Challenge Award) (증장 및 기장)	"	총재 (신설 07. 12. 20.)
지방 및 지구표창	최우수연맹 (패, 리본 및 부상)	지방·특수연맹	1개 연맹
	우수연맹 (패 및 리본)	지방·특수연맹	
	부문별 우수연맹 (패 및 리본)	지방·특수연맹 중 조직, 훈육, 훈련, 국제 부문별로 가장 우수한 1개 연맹	(개정 07. 12. 20.)
	최우수지구 (패, 리본 및 부상)	지구연합회	각 지방·특수연맹별 1개 지구연합회 (개정 07. 12. 20.)
	장기계속대(단) (패 및 리본)	대(단)	5년 이상 매 5년 마다 수여

② 헌장 제17조에 의해 중앙본부에서 수여하는 기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로장 (무궁화금장, 은장, 동장)
2. 봉사대장 (신설 89. 2. 28.)
3. 봉사장 (신설 90. 12. 20.)
4. 전국명예대장 (신설 99. 12. 17.)
5. 명예대장 (신설 99. 12. 17.)
6. 표창기장
7. 감사기장
8. 모범대장 표창기장

(포상규정)

9. 세계우애장

10. 국제봉사장(International Service Award) (신설 07. 12. 20.)

11. 훈련봉사장(Impeesa Award) (신설 22. 12. 22.)

11. 전국 명예스카우트 표창기장 (개정 88. 2. 26.)

12. 명예스카우트 표창기장

13. 모범대원 표창기장

14. 인명구조장

15. 선행스카우트 표창장 (개정 07. 12. 20.)

16. 우수대원 표창기장 (신설 82. 3. 27.)

17. 봉사대원 표창장 (개정 07. 12. 20.)

18. 국제교류장(International Challenge Award) (신설 07. 12. 20.)

③ 사무총장은 시급하게 포상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명예회의의 의장과 사전 협의한 후, 총재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고 차기 명예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7. 2. 20.)

④ 사무총장은 국제커미셔너와 협의하여 스카우트 활동을 통하여 국제적인 우애와 친선을 도모한 외국 스카우트 인사 및 단체에 대하여 세계우애장을 수여하고, 중앙명예회의에 보고한다. 단, 본 연맹 발전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획기적인 기여를 한 외국 스카우트 인사 및 단체에 대하여는 화랑 또는 태극을 바로 수여할 수 있다. 세계우애장의 추천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종 류	자 격	비 고
세계우애장 교류	- 한국 방문 교류 1회 이상 - 양국 스카우트 교류 3회 이상 - 한국스카우트연맹 스카우트 활동 기여도	교류 실적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실적에 한함. (2019년부터 적용)
세계우애장 화랑	- 세계우애장 수여 후 3년 경과 - 세계우애장 수여 후 양국 단위대 중심의 스카우트 교류 2회 이상 - 한국스카우트연맹 스카우트 활동 기여도	
세계우애장 태극	- 세계우애장 화랑 수여 후 5년 경과 - 세계우애장 수여 후 양국 단위대 중심의 스카우트 교류 3회 이상 - 한국스카우트연맹 스카우트 활동 기여도	

※ 교류 활동은 중앙본부 국제행사 승인 기준에 의한 승인된 행사에 한함. (개정 23. 12. 18.)

⑤ 사무총장은 중앙훈련원장과 협의하여 훈련봉사장 수여를 시행하고, 차기 중앙명예회의에 보고한다. (신설 22. 12. 22.)

⑥ 지방·특수연맹에서 수여할 수 있는 포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09. 11. 13.)

(포상규정)

구분	종 류	수 여 대 상	비 고
특별표창	지방관서의 표창 지방단체의 표창	훈육, 전종지도자 및 대원	
성인 및 단체	표창장(증장)	지도자	필요에 따라 표창패로 대신함
	감사장(증장)	대외 인사 및 단체	필요에 따라 감사패로 대신함
대원	지방명예스카우트 표창기장 (증장, 기장 및 장학금)	대원	
	우수대원 표창	대원	
기타	우수지구	지구 연합회	조직, 훈육, 훈련 및 기타 부문별로 우수한 지구
	우수대(단)	대(단)	

⑥ 지구연합회에서 수여할 수 있는 포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분	종 류	수 여 대 상	비 고
특별표창	지구관서 및 기타 단체 표창	훈육, 전종지도자 및 대원	
성인 및 단체	표창장(증장)	지도자	필요에 따라 표창패로 대신함
	감사장(증장)	대외인사 및 단체	필요에 따라 감사패로 대신함
대원	우수대원(증장)	대원	

제3장 표창의 심사기준

제10조(특별표창) ① 정부에서 수여하는 특별표창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3. 12. 19.)

1. 대통령 표창 : 다음에 해당하는 훈육 및 전종지도자
 - 가. 15년 이상 계속 훈육 및 전종지도자로 봉사하고 있는 자
 - 나. 무궁화은장 이상의 공로장 수상자로서 스카우트 육성에 특히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 (개정 80. 4. 1.)
 2. 국무총리 표창 : 다음에 해당하는 훈육 및 전종지도자
 - 가. 10년 이상 계속 훈육 및 전종지도자로 봉사하고 있는 자
 - 나. 무궁화동장 이상의 수상자로, 스카우트 육성에 지대한 기여를 한 자 (개정 80. 4. 1.)
 3. 장관표창 : 다음에 해당하는 훈육 및 전종 지도자 (개정 13. 12. 19.)
 - 가. 5년 이상 계속 훈육 및 전종지도자로 봉사하고 있는 자
 - 나. 표창기장 이상의 수상자 또는 스카우트 공로로 인한 교육감 표창장 수상자로서 스카우트 육성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개정 80. 4. 1.)
- ② 본 연맹 발전을 위하여 획기적인 기여를 한 인사에 대하여서는 전 제1호

(포상규정)

내지 제3호의 기준에 관계없이 심사할 수 있다. (신설 13. 12. 19.)

4. 지방자치단체장 표창 : 다음에 해당하는 훈육 및 전종지도자 (신설 15. 7. 2.)

가. 1년 이상 계속 훈육 및 전종지도자로 봉사하고 있는 자

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주최, 주관한 행사에 기여한 자

제11조(공로장) ① 공로장의 공적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금장 : 본 연맹 발전을 위하여 장기적, 헌신적으로 노력한 지도자로서 무궁화은장 수상 후 5년이 경과된 자 (개정 02. 1. 26.)

2. 무궁화은장 : 상급훈련을 수료한 지도자로서 무궁화동장 수상 후 5년이 경과되고 연맹 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지도자 (개정 93. 2. 26.)

3. 무궁화동장 : 연공 6년 이상인자로서 표창기장, 감사기장, (전국)명예대장, 모범대장 및 스카우트 공로로 정부표창을 수상하고 3년이 경과된 중급과정을 수료한 지도자로서 본 연맹의 조직, 훈육, 훈련 등에 현저히 기여한 자 (개정 13. 12. 19.)

② 본 연맹 발전을 위하여 재정, 행정, 국제적으로 획기적인 기여를 한 국내외 인사에 대하여는 전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관계없이 심사할 수 있다. (개정 93. 2. 26.)

제11조 2(봉사대장) 다음의 지도자에게 봉사대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공로장을 수상한 지도자가 정년(명예) 퇴임 및 스카우트 임원직에서 퇴임할 때 (개정 06. 12. 12.)

2. 공로장을 수상한 지도자가 순직하였을 때 및 원로스카우트가 타계하였을 때 추서할 수 있다. (개정 93. 2. 26.)

3. 본 연맹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있는 지도자가 퇴임하거나 순직하였을 때 (개정 06. 12. 12.)

제11조 3(봉사장) 다음의 인사에게 봉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93. 2. 26.)

1. 중급과정 이수 후 3년이 경과된 지도자가 정년 또는 명예 퇴직할 때 (개정 93. 2. 26.)

2. 삭제(개정 06. 12. 12.)

3. 6년 이상 계속 등록한 지도자이거나, 3년 이상 단위대를 육성한 지도자가 정년 또는 명예 퇴직할 때 (개정 04. 12. 16.)

4. 조직, 훈육, 훈련, 행사 등에 특별한 봉사 실적이 있는 인사 (개정 04. 12. 16.)

제12조(표창 및 감사) 표창기장, 표창장, 감사기장, 감사장, 전국명예대장, 명예대장, 국제봉사장(International Service Award)의 공적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 12. 17.)

1. 표창기장 : 본 연맹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훈육 및 전종지

(포상규정)

도자로서 3년 이상 등록하고 중급과정을 이수한 지도자 (개정 06. 12. 12.)

2. 표창장

가. 중앙본부에서 수여하는 표창장은 지방·특수연맹 표창장을 수상한 자 중에서 스카우트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스카우트 지도자

나. 지방·특수연맹 표창장은 스카우트 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스카우트 지도자 (개정 09. 11. 13.)

다. 지구연합회 표창장은 해당 지구의 스카우트 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스카우트 지도자

3. 감사기장 : 본 연맹 발전에 협조 지원한 공로가 현저한 협조지도자, 대외 인사 및 외국인 (개정 87. 2. 20.)

4. 감사장 : 중앙본부, 지방·특수연맹 및 지구연합회에서 수여하는 감사장은 스카우트 운동에 협조 지원한 공로가 있는 협조 지도자, 단체, 대외인사 및 외국인 (개정 09. 11. 13.)

5. 모범대장 표창기장 : 다음의 조건을 구비한 지도자로서 각 지방·특수연맹마다 가장 우수한 지도자 (개정 09. 11. 13.)

다만, 표창인수는 전년도 말 중앙본부 훈육지도자 등록 통계에 의거하여 배정한다. (개정 87. 2. 20.)

가. 3년 이상 계속 단위대를 지도하고 있는 훈육지도자 (개정 87. 2. 20.)

나. 모범적인 대 운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6. 전국명예대장 : 명예대장 중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열성을 다하여 대원들을 지도하여 스카우트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대장으로서, 비버스카우트와 컵스카우트 부문 중에서 1명, 스카우트와 벤처스카우트 부문 중에서 1명으로 총 2명 (개정 11. 12. 1.)

7. 명예대장 :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고, 지방·특수연맹별로 가장 우수한 대장을 비버스카우트와 컵스카우트 부문 중에서 1명, 스카우트와 벤처스카우트 부문 중에서 1명으로 총 2명 (개정 11. 12. 1.)

가. 5년 이상 계속 등록하고 단위대를 지도하고 있는 상급과정 이상 수료한 지도자 (개정 13. 12. 19.)

나. 해당 연도에 실천한 공적 중 스카우트 정신이 투철하고 대원들의 훈육 지도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지도자

8. 국제봉사장(International Service Award) : 다음의 조건을 구비한 지도자로서 스카우트 국제 활동을 통한 봉사실적이 뛰어난 지도자 (개정 13. 12. 19.)

가. 3년 이상 계속 등록하고 최근 3년 이내에 국제회의 및 행사에 3회 이상 참가(봉사)한 지도자 (개정 13. 12. 19.)

나. 중급과정 이상 수료한 지도자 (개정 13. 12. 19.)

제13조(대원표창) 대원의 제 표창 공적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포상규정)

1. 전국명예스카우트 표창기장 : 명예스카우트 중 가장 모범적인 부문별(스카우트, 벤처스카우트) 각 1명 (개정 18. 12. 13.)
2. 명예스카우트 표창기장 : 다음의 조건을 구비한 대원으로서 각 지방·특수연맹 별로 가장 우수한 부문별(스카우트, 벤처스카우트) 각 1명 (개정 18. 12. 13.)
 - 가. 스카우트에 가입하여 3년 이상 활동한 스카우트·벤처스카우트 대원으로서 별급 이상의 급위이거나 벤처스카우트인 경우 벤처링어워드 과정을 1개 이상 취득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원 (개정 06. 12. 12.)
 - 나. 해당 연도에 실천한 공적 중 특히 스카우트 정신이 투철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에 봉사한 실적이 현저한 대원
3. 모범대원 표창기장 : 다음의 조건을 구비한 대원으로서, 각 지방·특수연맹마다 부문별로 가장 우수한 대원 (개정 09. 11. 13.)

다만, 표창 인수는 전년도 말 중앙본부 부문별 대원등록 통계에 의거하여 배정한다. (개정 87. 2. 20.)

 - 가. 스카우트에 가입하여 2년 이상 활동한 대원으로서 컵스카우트는 사슴, 스카우트는·벤처스카우트는 1급 이상의 급위 이거나 벤처스카우트인 경우 벤처링어워드과정을 1개 이상 취득한 대원 (개정 06. 12. 12.)
 - 나. 평소 스카우트 정신이 투철하여 뛰어난 선행으로 타의 귀감이 되고 희생적 봉사를 실천한 모범적인 대원
4. 인명구조대원 : 스카우트에 가입한 대원으로서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인명을 구조한 대원 또는 구조하기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스카우트의 용감성과 기지와 기능을 발휘한 대원 (개정 95. 2. 28.)
5. 선행스카우트 표창장 : 다음의 조건을 구비한 대원으로서 전국적으로 뛰어난 선행을 실천한 대원

다만, 표창인수는 전년도 말 중앙본부 부문별 등록통계에 의거하여 배정한다. (개정 07. 12. 20.)

 - 가. 스카우트에 가입하여 2년 이상 활동한 대원으로서 컵스카우트는 사슴, 스카우트·벤처스카우트는 1급 이상의 급위를 취득한 대원 (개정 06. 12. 12.)
 - 나. 평소 스카우트 정신이 투철하여 뛰어난 선행으로 타의 귀감이 되고 희생적 봉사를 실천한 모범적인 대원
6. 우수대원 표창
 - 가. 중앙본부에서 수여하는 우수대원 표창기장은 당해 부문을 이수(졸업)하는 각 부문 단위대의 대원 중 해당 부문에서 2년 이상 활동한 대원으로서 컵스카우트는 무지개 과정을, 스카우트·벤처스카우트는 1급 이상의 급위 대원 중 각 1명의 대원 (개정 06. 12. 12.)
 - 나. 지방·특수연맹 및 지구연합회에서 수여하는 우수대원 표창은 전 가호의 조건을 구비한 대원으로서 각 단위대에서 전 가호의 수상자를 제외한 우수대원 1명 (개정 09. 11. 13.)

(포상규정)

7. 봉사대원 표창

중앙본부에서 수여하는 봉사대원 표창장은 해당부문에서 1년 이상 활동하고 당해 연도 봉사시간이 20시간 이상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봉사실적을 가진 대원으로서 타의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대원 (개정 07. 12. 20.)

8. 국제교류장(International Challenge Award) : 다음의 조건을 구비한 대원으로서 스카우트 국제 활동을 통한 실적이 뛰어난 대원 (개정 13. 12. 19.)

가. 스카우트에 가입하여 2년 이상 활동하고 최근 2년 이내에 국제교류활동에 2회 이상 참가(봉사)한 대원 (개정 13. 12. 19.)

나. 스카우트·벤처스카우트로서 1급 이상의 급위를 취득한 대원

제14조(지방 및 지구표창) ① 지방·특수연맹에 대한 제 표창 공적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09. 11. 13.)

1. 최우수연맹 표창 : 조직, 훈육, 훈련, 국제 및 기타 부문의 당해 연도 종합 성적이 가장 우수한 1개 연맹 (개정 19. 2. 13.)

2. 우수연맹 표창 : 조직, 훈육, 훈련, 국제 및 기타 부문의 당해 연도 종합 성적이 최우수연맹 다음으로 우수한 3개 연맹 (개정 19. 2. 13.)

3. 특별 표창 : 주요 부문 우수 및 전국 단위 행사 주관, 스카우트 운동 저변 활동을 위해 활동의 독려 등이 필요한 5개 연맹(5~9순위) (개정 19. 2. 13.)

② 지구연합회에 대한 제 표창 공적 심사 기준은 전항 각호에 준한다.

제15조(단위대 및 단 표창) ① 지방·특수연맹에서 단위대 및 단에 수여하는 제 표창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09. 11. 13.)

1. 우수대 표창 : 2년 이상 계속 등록한 대(단)로서, 지난 1년간의 조직, 훈육 및 기타부문의 실적이 우수한 대(단) (개정 07. 12. 20.)

2. 장기 계속 등록대(단) 표창

가. 5년 이상 계속등록을 필하고, 활동 실적이 우수한 대(단)

나. 장기 계속 등록대(단)에 대하여는 연수에 따라 별표 제3호의 1과 같은 리본을 수여한다. (개정 82. 3. 27.)

제4장 수 여

제16조(수여시기) ① 각종 표창은 정기 또는 수시로 수여한다. 정기표창은 전국 총회시, 지방총회시, 지방위원회 및 창립기념 행사시로 한다.

다만, 우수대원 표창은 당해 학교 졸업시 또는 승진 시에 행한다. (개정 80. 4. 1.)

② 수시 표창은 각종 스카우트 행사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행한다.

제17조(표창 명의 및 수여자) 본 연맹에서 수여하는 각종 표창의 수여자는 다음

(포상규정)

과 같다.

1. 포상규정 제9조의 중앙본부에서 시행하는 성인 및 단체, 대원, 지방 및 지구, 단위대에 대한 표창은 총재가 수여하고, 지방·특수연맹에서 수여하는 성인, 단체, 대원 및 단위대 표창은 연맹장이 수여하며, 지구연합회에서 수여하는 각종 표창은 지구회장이 이를 수여한다. (개정 09. 11. 13.)
다만, 지역협의회가 구성된 지역에서는 지구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역협의회 위원장 명의로 할 수 있다.
2. 지방·특수연맹에서 수여하는 각종 표창은 매년 12월 중 그 결과를 중앙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표 양식 제11호). (개정 15. 7. 2.)
3. 지구연합회에서 수여하는 각종 표창은 그 계획을 소속 지방·특수연맹의 승인을 얻어 행하여야 한다. (개정 09. 11. 13.)
4. 본 연맹에서 수여하는 각종 표창, 증장 문안은 별표 제4호와 같다.

제18조(대리수여) 중앙본부, 지방·특수연맹 및 지구연합회의 각종 포상 수여 시 수여자가 부재인 경우에는 수여자가 지명하는 바에 따라 대리 수여할 수 있다. (개정 09. 11. 13.)

제19조(대리 수상) 수상자가 사망 또는 사고로 인하여 수여식에 참석할 수 없을 때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5장 패 용

제20조(패용 시기) 공장·기장의 패용은 행사 및 의식 시에 한하여 패용한다.

제21조(패용 방법) 패용 방법은 별표 제3호 양식과 같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7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1978년 9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1980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1982년 3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1986년 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1987년 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표창추천 양식 및 문안의 별표 제1호의 표창추천 제양식과 제4호의 표창증서 문안 및 규격은 중앙명예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신설 87. 2.)

20.)

8. 이 규정은 1988년 2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1989년 12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1990년 1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1993년 2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2. 이 규정은 1994년 2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3. 이 규정은 1995년 2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4. 이 규정은 1997년 12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5. 이 규정은 1999년 6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6.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7. 이 규정은 2001년 12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8. 이 규정은 2002년 2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9.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0.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1. 이 규정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2.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3. 이 규정은 2009년 2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4.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5.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6. 이 규정은 2015년 7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7. 이 규정은 2017년 2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8.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9. 이 규정은 2019년 2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0.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1.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2.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 제1호)

표창 추천 제양식

1. 지도자 표창

- 가. 연맹장 추천 공문 1부(중앙본부 제출) (개정 09. 2. 12.)
- 나. 지구연합회 회장 추천 공문 1부(지방·특수연맹 제출) (개정 09. 2. 12.)
- 다. 공적조서 1부
 - (1) 정부표창 공적조서(표 양식 제1호)
 - (2) 스카우트 표창 공적조서(표 양식 제2호)

(3) 국제봉사장은 국제 활동 확인서(표 양식 제4호) (신설 07. 12. 20.)

2. 대원 표창

가. 명예스카우트

- (1) 연맹장 추천 공문 1부(중앙본부 제출) (개정 09. 2. 12.)
- (2) 지구연합회 회장 추천 공문 1부(지방·특수연맹 제출) (개정 09. 2. 12.)
- (3) 육성단체대표자 추천서 1부(표 양식 제3호)
- (4) (삭제 07. 12. 20.)
- (5) (삭제 07. 12. 20.)
- (4) 대원공적조서 1부 (표 양식 제5호)
- (7) (삭제 07. 12. 20.)
- (8) (삭제 07. 12. 20.)
- (9) (삭제 07. 12. 20.)
- (10) (삭제 07. 12. 20.)
- (11) 명함판 사진 1매 (개정 07. 12. 20.)

나. 모범대원

- (1) 연맹장 추천 공문 1부(중앙본부 제출) (개정 09. 2. 12.)
- (2) 지구연합회 회장 추천 공문 1부(지방·특수연맹 제출) (개정 09. 2. 12.)
- (3) (삭제 07. 12. 20.)
- (4) 대원 공적조서 1부(표 양식 제5호)

다. 인명구조대원

- (1) 연맹장 추천 공문 1부(중앙본부 제출) (개정 09. 2. 12.)
- (2) 지구연합회 회장 추천 공문 1부(지방·특수연맹 제출) (09. 2. 12.)
- (3) (삭제 07. 12. 20.)
- (4) 인명구조 확인서 1부(표 양식 제6호)
- (5) 인명구조 증빙 유첨물(신문, 사진, 기타)

라. 선행스카우트

- (1) 연맹장 추천 공문 1부(중앙본부 제출) (개정 09. 2. 12.)
- (2) 지구연합회 회장 추천 공문 1부(지방·특수연맹 제출) (개정 09. 2. 12.)
- (3) 육성단체 대표자 추천서 1부(표 양식 제3호)
- (4) (삭제 07. 12. 20.)
- (5) (삭제 07. 12. 20.)
- (6) (삭제 07. 12. 20.)
- (7) (삭제 07. 12. 20.)

마. 우수대원

- (1) 연맹장 추천 공문 1부(중앙본부 제출) (개정 09. 2. 12.)
- (2) 육성단체 대표자 추천서 1부(표 양식 제 3호)
- (3) 우수대원 표창명단 1부(표 양식 제8호)

바. 봉사대원

- (1) 연맹장 추천 공문 1부(중앙본부 제출) (개정 09. 2. 12.)
- (2) 지구연합회 회장 추천 공문 1부(지방·특수연맹 제출) (개정 09. 2. 12.)
- (3) 육성단체 대표자 추천서 1부(표 양식 제3호) (개정 07. 12. 20.)

사. 국제교류장(International Challenge Award) (신설 07. 12. 20.)

- (1) 연맹장 추천공문 1부(중앙본부 제출) (개정 09. 2. 12.)
- (2) 육성단체 대표자 추천서 1부(표 양식 제3호)
- (3) 국제 활동 확인서 및 증빙서류(참가증명서) 1부 (표 양식 제 7호)

3. 지방, 지구, 대(단) 표창

가. 연맹표창 : 중앙본부에서 작성한다.

나. 지구연합회 표창

- (1) 연맹장 추천 공문 1부 (개정 09. 2. 12.)
- (2) 지구연합회 사업실적표 1부

다. 대(단) 표창

- (1) 지구연합회 회장 추천 공문 1부 (09. 2. 12.)
- (2) 우수대의 대원 진급 및 기능장 취득 실적표 1부
- (3) 장기 계속 등록대 명부 1부 (표 양식 제9호)